

## 동명스타디움(STADIUM)운영규정

2001.11.01.제정    2004.03.01.일부개정    2014.03.28.일부개정

### <스포츠지원센터>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동명스타디움 시설 공간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관리 범위) 관리범위는 해당공간의 부대시설에 한한다.

제 3 조 (사용허가) ①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2주 이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용허가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2. 행사계획서 1부
3. 기타 필요한 사항

③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·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
④본 대학교의 대학(과) 및 학생단체의 행사시에는 해당대학 학(과)장 또는 학생처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.

제 4 조 (이용시간) 사용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본시설을 이용할 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하절기 : 오전 08:00 - 19:00
2. 동절기 : 오전 09:00 - 18:00

제 5 조 (사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시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3. 기타 학생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6 조 (원상복귀) 스타디움 사용자가 그 사용시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·설비 등을 원상복귀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조 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시설 및 설비 등을 망실·

훼손하였을 때 사용자는 원상복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기타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지 제1호 서식] 개정 내용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# 동명스타디움 사용신청서

일 자	년 월 일 (사용시간 : 부터 : 까지)
사용장소(실)	동명스타디움
사 용 목 적	
참 가 인 원	( ) 명

본 ( )에서 아래와 같이 실(장소)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신청 시 참고사항

- 운동장 보수 및 수업이 있을 경우 운동장 사용불가.
- 시설훼손 및 청결유지(휴지, 음료수별, 쓰레기 등)치 못할 시 향후 사용불허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 : (인)

연 락 처 :

지도교수·학(과)장 : (인)

결	계				
재					

#### 동명스타디움사용허가증

○사용학과 : ○일 시 : 년 월 일 ( : - : ) ○사용장소 : 동명스타디움 ○참석인원 : ( ) 명 상기와 같이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장학·복지팀	*준수사항 · 사용기간을 준수한다. · 시설훼손, 파손주위 및 사용 후 청소, 정리정돈을 깨끗이 한다. · 기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한다.
---	---

동 명 대 학 교